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무위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 월 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577호, 2022. 4. 19., 제정)을 개정함에 따라 데이터 품질인증 신청, 데이터 품질인증 표시 및 데이터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데이터 품질인증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명확하게 규정함(제4조의2,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 나. 데이터 품질인증서와 데이터 품질인증에 대한 표시를 명확하게 규정함(제4조의3, 별지 제5호의3서식, 별표 신설)
- 다.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서와 데이터품질인증기관 지정서에 대한 서식을 명확하게 규정함(제4조의4, 별지 제5호의4서식, 별지 제5호의5서식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치평가기관의 지정 신청) 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가치평가기관의 지정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조(가치평가의 신청)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 가치평가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4조(데이터사업자의 신고 절차 등) 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데이터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

지 제5호서식의 데이터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4조의2(데이터 품질인증의 신청) 영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

제4조의3(데이터 품질인증의 표시 등) ① 영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5호의3서식과 같다.

② 영 제20조의3제5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 표시는 별표와 같다.

제4조의4(데이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① 영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데이터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4서식과 같다.

② 영 제20조의5제3항 전단에 따라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5서식의 데이터품질인증기관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5조(데이터거래사의 등록 신청 등) ① 영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데이터거래사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데이터거래사 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6조(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① 영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부칙 <제89호, 2022. 4. 20.>

이 규칙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호, 2022. 00. 00.>

이 규칙은 2022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데이터 품질인증 표시

[별지 제1호서식]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데이터 가치평가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데이터사업자 신고서(신규, 변경)

[별지 제5호서식] 데이터사업자 신고확인서

[별지 제5호의2서식] 데이터 품질인증 신청서

[별지 제5호의3서식] 데이터 품질인증서

[별지 제5호의4서식]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별지 제5호의5서식]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별지 제6호서식] 데이터거래사 등록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데이터거래사 등록증

[별지 제8호서식]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데이터 품질인증 표시(제4조의3제2항 관련)

1. 표지도형



2. 제도법

가. 기본형태

- 1) 데이터 인증 로고는 기본 로고와 한글명칭으로 구성되어 사용한다. 로고의 컬러, 폰트는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 2) 굵, 관리 인증을 획득한 경우 기본 형태 로고를 활용할 수 있다. 배경으로 인해 로고를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 로고와 회색 폰트 조합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나. 온라인 활용

- 1) 인증을 획득한 시스템 또는 인증 획득 사실을 전파하기 위한 배너에 기본 로고와 한글 조합으로 활용 가능하다.
- 2) 로고와 폰트가 식별 가능할 정도로 크기를 확보하여 활용하며 어두운 배경색과 이용할 경우 배경색(background color, BG컬러) 사용기준에 맞추어 로고와 흰색 폰트를 이용하여 노출한다.
- 3) 인증 로고에는 링크를 연결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인증서 또는 인증 획득 사실이 공표된 공지사항, 언론 기사 등으로 연결 가능하다.

다. 표지도형의 한글 및 영문 글자는 고딕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지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라. 표지도형의 색상은 흰색을 기본색상으로 하고, 배경화면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검정색 또는 회색으로 할 수 있다.

마. 표지도형 내부의 "DATA Certified", "(데이터인증)"의 글자 색상은 파란색상과 동일하게 하고, 하단의 "데이터품질인증"과 "Certificate of Data~"의 글자는 회색으로 한다.

데이터 품질인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홈페이지		
담당자	성명	부서(부서명)	
	직위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내용	인증 대상명		
	인증 대상분야		
	상세 내용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데이터 품질인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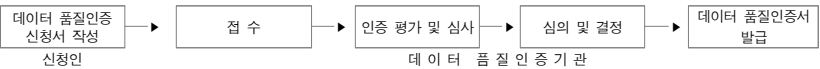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4제1항 각 호의 품질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4제3항 각 호의 품질인증 대상 관련 자료
------	---

작성 방법

1.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 ① 신청인란에 법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담당자란에는 법인의 해당 업무 담당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② 성명(대표자)란에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의 이름을 모두 적습니다.
 - ③ 상호(법인명)란에 주식회사의 경우 (주)의 형태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④ 주소란에 사업자등록증 상의 본사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⑤ 신청인(대표자)의 날인란은 대표자의 서명 또는 법인인감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 ① 담당자란에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개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신청인란은 공란으로 둡니다.
 - ② 신청인(대표자)의 날인란에는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개인의 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제 호

데이터 품질인증서

- 대표자 성명:
- 상호 또는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주소 또는 소재지:
- 인증 대상:
- 인증 수준:
- 유효 기간: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데이터 품질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인증기관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데이터품질인증기관 지정서

제 호

1. 기 관 명: (법인등록번호:)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지 정 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5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데이터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F	O	I
---	---	---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직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데이터 품질인증의 신청) 영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
		제4조의3(데이터 품질인증의 표시 등) ① 영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5호의3서식과 같다.
		② 영 제20조의3제5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 표시는 별표와 같다.
		제4조의4(데이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① 영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데이터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4서식과 같다.
		② 영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별표 [신설]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의5서식의 데이터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한다.

■ 데이터 산업권을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데이터 품질인증 표시 제4조의3제2항 관련

1. 표지도형



2. 제도법

가. 기본형태

- 1) 콘크리트 인공 로고는 기본 로고와 한글명칭으로 구성하여 사용한다. 로고의 크기, 형태는 일의로 변형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 2) 길, 관여 인장을 취득한 경우 기본 형태 로고를 활용할 수 있다. 배경으로 인해 로고를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 로고와 회색 본뜨 조합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나. 온라인 활용

- 1) 인증을 획득한 시스템 또는 인증 획득 사실을 전파하기 위한 매체에 기본 오프로와 한글 조합으로 활용 가능하다.
- 2) 오프로와 콘트라스트 선택 가능할 정도로 크기를 확보하여 활용하여 어두운 배경색과 어울릴 경우 배경색(background color, BG컬러) 사용기준에 맞추어 오프로와 흰색 텍스트를 이용하여 노출한다.
- 3) 인증 오프로에서는 영글을 수 있도록 온라인 인증서 또는 인증 획득 사실이 공표된 공개화, 언론 기사 등으로 연결 가능하다.

다. 피치드럼의 한쪽 끝을 오른 발로 누르고 치도록 하고, 피치 크기는 피치드럼의 크기에 따라 조절한다.

라. 표제도형의 색상은 원색을 기본색상으로 하고, 배경화면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검정색 또는 회색으로 할 수 있다.

마. 표지도면 내부의 "DATA Certified", "(데이터인증)"의 글자 색상은 파란색상과 동일하게 하고, 하단의 "데이터품질인증"과 "Certificate of Data-"의 글자는 회색으로 한다.

■ 대미지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 (별지 제5호외2서식)

데이터 품질인증 신청서

평가항목		평가항목
선정인	영양·재료사 장보(장보장)	영양전문직보 사립사립전문보
	주조	
	훈화사지	
발달사	영양	영양(영양사)
	특위	영양(영양) 또는 영양전문보
	전사부주조	
선정내용	영양·재료사	
	영양·재료사	
	영양·재료사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에 따라 데이터 유통진흥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100

© 2006 The Authors
Journal compilation © 2006 Blackwell Publishing Ltd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의 장 권하

첨부서류	1. '대외의 산업진흥 및 이공육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각 호의 동등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고 2. '대외의 산업진흥 및 이공육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각 호의 동등기준에 대한 관련 자료
------	---

최성원 편

1.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 신청자에게 합법적 권한 사항을 기록하고 해당자에게는 정당한 배제 정보 해당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 가 신청(기록요청) 시 정보기록을 이미 보유하고 있음을 모두 기술한다.
 - 가 정보(발달) 단계, 유사자의 경우 (주변) 사생활에 대해 유사자가 말한다.
 - 가 유사자 정보 기록을 이미 본자의 소재지 사생활에 대해 유사자가 말한다.
 - 가 신청(기록요청)의 발원인 정보와 배제 정보, 해당정보를 발원자에게 제공한다.
2.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 해당자에게 불합리한 신청을 신청하는 개인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신청정보를 불합리한 경우 불한다.

15210110



210mm×297mm(책 크기 180g) 1권

별지 제5호의3서식 [신설]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제 호

데이터 품질 인증서

○ 대표자 성명:

○ 상호 또는 병칭:

○ 주된 사무소의 주소 또는 소재지:

○ 인증 대상:

○ 인증 수준:

○ 유효 기간: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데이터 품질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인 증 기 관 장 직인

210mm×297mm(보통용지(1종) 120g/㎡)

별지 제5호의4서식 [신설]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4서식]

데이터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4대영역(대부분 산업 신청인, 전자 융합산업)

신청인명	주소	전화기	팩스
대표자 성명	법정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소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바입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신청인	1.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0조제4제1항(초·중·고·대·특·초·중·고·대·특) 및 제20조의3제2항(초·중·고·대·특)에 따른 인증대상 분야 중 1개 이상	주요업종
제출서류	2. 인증 3. 사업계획서 4. 국제적인 데이터 활용기준 및 품질 인증을 위한 방안	및

첨단 서비스
특정사업

첨단 서비스
특정사업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심사 → 평가 및 결정 → 지정서 발급

신청서 접수 → 심사 → 평가 및 결정 → 지정서 발급

210mm×297mm(제1종(80g/㎡) 이하) 보통지(80g/㎡)

별지 제5호의5서식 [신설]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5서식]

제 호

데이터품질인증기관 지정서

1. 기관명: (법인등록번호:)

2. 대표자:

3. 소재지:

4. 지정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데이터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직인

210mm×297mm(제1종(80g/㎡) 이하) 보통지(80g/㎡)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	
연 락 처	(044) 202 - 6297